

『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』 지원 안내

1. 사업 개요

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

2. 지원 대상

- **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** (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)
 - ①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 경비원·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
 - ② 30인~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
 - ③ 30인~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
 -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·장애인활동지원기관·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·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
- ☞ (지원 제외)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이상, 개인은 “사업소득”, 법인은 “당기순이익” 기준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3. 지원 요건

-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**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**
 - * 보수액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 + 통상적수당 + 연장근로수당 등)
 -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
- **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**,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
 - * 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
4. 지원 금액

-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
 -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 - *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인상(‘18.8.7.): 40시간 미만~20시간 이상 12만원, 20시간 미만~10시간 이상 9만원, 10시간 미만 6만원

5. 신청 및 지급

- **(신청)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**
또는 **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·고용센터 방문·우편·팩스 신청**
 - * 18년도부터 기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추가 신청없이 계속 지원(단, “최저임금 준수 확인서” 제출 필요)
 - * 신규 입사(근로자 변경)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(월평균보수변경신고) 상 “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” 체크
- **(지급) 현금지급(매월 15일)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**
 - ※ 상세한 세부사항은 『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』를 참고(서식/기타)

문의: 근로복지공단 Tel. 1588-0075, Fax(양산지사) 0502-280-1900